

「2024년 엔젤투자 활성화 유공 포상」 공고

(사)한국엔젤투자협회는 국내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「2024년 엔젤투자 활성화 유공 포상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‘24년 9월 30일
(사)한국엔젤투자협회장

1. 포상 개요

- (포상 규모)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총 3점
- (포상 대상) 국내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(단체) 중 최근 3년 이상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
- (포상 시기) ‘24년 11월 예정

2. 추천 대상

- (엔젤투자자)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엔젤투자자로서 투자 및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
- (전문개인투자자) 전문개인투자자로서의 요건(별첨1 참조)을 모두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고,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전문개인투자자로서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
- (개인투자조합 GP) 개인투자조합으로서의 요건(별첨1 참조)을 모두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 받아,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활동 중인 조합의 GP로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

- (엔젤클럽) 엔젤클럽의 결성 요건(별첨1 참조)을 모두 갖추고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,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활동 중인 엔젤클럽으로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클럽
- (엔젤투자지원) 국내 엔젤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,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공적이 인정되는 기업(단체) 또는 개인으로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

3. 추천 제한

- 추천 제한에 대한 기준은 ‘포상 및 추천 제한 기준(별첨 2)’ 참조

4. 포상 절차

단계(일정)	주관	세부내용
신청 접수 (9.30 ~ 10.11)	한국엔젤투자협회	- 협회 홈페이지(www.kban.or.kr)를 통한 공고 및 이메일 신청·접수
포상심의위원회 심사 (10월 중)	한국엔젤투자협회	-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후 신청자 요건 검토 및 서면심사, 전문가 심사 진행
사실 조회 (10월 중)	중소벤처기업부	- 포상신청자 사실조회 - 포상 및 추천 제한 기준 적용 여부 확인
공적심의회 심의 (11월 중)	중소벤처기업부	- 중기부 공적심의회에 포상추천후보자 심의
결과 발표 (11월 중)	한국엔젤투자협회	-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포상자(단체) 발표
시상 (11월 중)	한국엔젤투자협회	- 엔젤투자 관련 행사 시 수여식 진행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신청 · 접수

- (신청 기간) '24년 9월 30일(월) ~ '24년 10월 11일(금), 18:00까지
- (신청 방법) 제출 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
- (제출 서류) 신청서, 공적조서, 추천서, 개인(기업)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
- (접 수 처) 한국엔젤투자협회 / mjryu@kban.or.kr

6. 유의 사항

-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또는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7. 문의처

-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팀
 - 전화 : 02-3440-7409, 이메일 : mjryu@kban.or.kr

2024. 9. 30.

(사)한국엔젤투자협회장

[별첨 1]

□ 전문개인투자자 확인 요건 : 투자실적 + 경력요건 충족 필수

<p>투자 실적</p>	<p>-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 보유(주식, 지분) * 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,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아래 ① ~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.</p> <p>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통한 투자일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벤처기업 ·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·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<p>②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.</p> <p>③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(이하 “특수관계인”이라 한다)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</p> <p>④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투자일 것</p>
<p>경력 (11개 중 1개 충족)</p>	<p>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</p> <p>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창업자(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.)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</p> <p>②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</p> <p>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,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벤처투자회사 나.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(이하 “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”라 한다) 다.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

라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
(이하 “신기술창업전문회사”라 한다)

마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

바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
지주회사

- 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(이하 “기술사”라 한다)
- ⑤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(이하 “변호사”라 한다)
- ⑥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(이하 “공인회계사”라 한다)
- ⑦ 「변리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(이하 “변리사”라 한다)
- ⑧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
- ⑨ 박사학위(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)를 소지한 사람
- ⑩ 학사학위(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) 소지자로서 국·공립연구기관, 「정
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
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(이
하 “정부출연연구기관”이라 한다)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(이하 “기업부설연구소”라 한다)
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⑪ 전문개인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□ 개인투자조합 승인 요건

-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,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,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,
④ 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지분 3% 이상, ⑤ 존속기간 5년 이상

□ 엔젤클럽의 결성 요건

- 회장,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
- 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* 1인 이상

* 최근 3년간,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,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또는
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(전문개인 또는 적격엔젤)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

[별첨 2]

포상 및 추천 제한 기준

가. 포상기준

- 수공기간 :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(단체)
- 이중표창 금지 :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
 - * (예시) 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, 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는 경우
- 재포상 금지 :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※ 정부포상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등) 수여자 또한 수여일로부터 포상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

나. 추천제한

- ※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

<일반국민>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처분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※ 「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중화운동 관련자가 민중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 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- 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 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

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
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- 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

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<단체 표창>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*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-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-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 - * 각각의 세부기준은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- 수사 중이거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